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2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5.

발 의 자: 박성민·구자근·최보윤

이인선 · 김성원 · 강민국

강승규 • 박상웅 • 서일준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실용신안법」이 준용하고 있는 「특허법」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"책임질 수 없는 사유"에서 "정당한 사유"로 완화하였음.

그러나, 현행 「특허법」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"정당한 사유"의 인정률은약 16%이며, 국내 개인·중소기업의 신청률은약 83%에 달하고 있는상황을 보면, 국내 개인·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,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「특허법」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.

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「특허법」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「특허법」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「실용신안법」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「특허법」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실용신안법」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「특허법」 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제4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5629호)」, 「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62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2항제4호 중 "내거나 보전하였을"을 "냈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실용 신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	제21조(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		
등록공고) ① (생 략)	등록공고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	2		
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			
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			
하여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	4		
허법」 제81조의3제1항에 따			
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	<u>냈을</u>		
<u>을</u> 때		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